

가상자산 관련법 한국 입법 동향

Index

- 01 I. 제391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 02 II. 제401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 02 III. 제403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 02 IV. 제404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 04 V. 제405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I. 제391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1년 11월 17일

- **쟁점**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 개정, 전금법, 특금법 개정 혹은 별도의 제정법 중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 **1설**: 기존 법안의 개정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정법이 효과적이다. (소위원장 김영욱)
 - **2설**: 현재 용어부터 통일이 안 된 상태이므로, 제정법 방향은 갖추되 이후 국외 입법추진과 발 맞추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홍성국 위원)
 - 금융위원회 관점: 제정법 중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제일 시급하다.
 - 독립된 법으로 입법하되, 산업 방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입법하는 것으로 합의

II. 제401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2년 12월 26일

- 쟁점) 가상자산 사업법이 시간이 걸리므로, '23년 1월로 지연 (박용진 위원, 김종민 위원장)

III. 제403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3년 2월 27일

- 쟁점) 시간제한으로 가상자산까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다.

IV. 제404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3년 3월 28일

■ 쟁점1) 가상자산 입법 단계화

- 1단계: 거래법,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윤창현 위원, 우선채택)
- 2단계: 영업행위 상장 발행
- [윤창현 의원 2단계 입법 제안 통과](#)

■ 쟁점2) 가상자산 용어 정의

- [특금법¹ 상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지속 사용](#) (금융위 김소영)

■ 쟁점3)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CBDC를 제외하는지 여부

- 1설:** CBDC를 관련법령의 규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을 경우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금융위 김소영)
- 2설:**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서 가장자산의 정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BDC가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추후 산업의 방향을 보고 CBDC에 대한 논의를 해도 문제없음. (김한규 위원)
- 추후 논의**

¹ <https://www.law.go.kr/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쟁점4)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 감독 등 주무기관

- 1설: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책임주체는 금융위원회이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검사 감독 과정에서 금감원으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윤창현, 이용우 위원)
- 2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정책을 제안하는 부서이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정책을 금융위원회가 주관할 경우 1)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모습과 2)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기관으로 보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윤한홍 위원)
※ 추가적으로, 감독기구 증설을 위한 예산 문제 제기 (윤한홍 의원 → 금융위원회)
- 보충) 가상자산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에 조사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한규 위원)

■ 쟁점5)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기관 여부

- 1설: 처음부터 금융기관이라고 인정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 (윤한홍 위원)
- 2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자본시장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작업 (윤창현 위원, 이용우 위원)
※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소관이 옳다. (윤창현 위원)

■ 쟁점6) 거래소 거래기록 보존의무

- 훼손가능한 사업자의 거래소 장부기록 보존 의무
- 추후 논의

V. 제405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3년 4월 25일

■ 쟁점1) 법안에 '국민경제 발전' 구절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

- 2단계 입법으로 합의되었고, 1단계는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배제되어도 타당하다.

■ 쟁점2) 가상자산 범위에서 CBDC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1설: 국제적으로 CBDC와 가상자산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재 CBDC가 가상자산업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은 맞으나, 향후 CBDC의 적용 방향에 대해서 아직 모르므로 적용 방향이 확정될 경우 한국은행법에 추가하거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위 김소영)

※ CBDC는 화폐이므로 가상자산이 아니다.

- 2설: CBDC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이후 CBDC 프로젝트에서 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한국은행 이종렬)

- CBDC 명시 배제로 확정

■ 쟁점3) 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 증권성 가상자산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 가상자산은 이미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으므로, 증권성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실익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금융위 김소영)

■ 쟁점4)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기록 생성 보관의무 기간

- 1설: 15년 - 상속세 증여세의 제척기한을 고려 (이용우 위원)
- 2설: 5년 - 원안의 입장 (법인세 관련 시효 고려, 오기형 위원)
- 15년으로 확정

■ 쟁점5)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 도입 여부

-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위해 집단소송 확대가 필요하므로 무리 없음.

■ **쟁점6) 부정거래 유형관련 처벌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의 건**

- 죄형법정주의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상근 위원, 금융위 김소영)**

■ **행정기구와 분리된 자문기구 설치에 대한 건**

- 1설:** 금융위 금감원과 독립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립하여 사무 지원
- 2설:** 금융위원회 하부에 정책자문 위원회 설립
- 2설에 따라 정책자문 위원회 설립으로 확정**